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8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 강득구·김기표·김남희

김영환 · 김 윤 · 민병덕

박 정 • 유종오 • 이인영

이재정 • 이학영 • 임광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 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했지만,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막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는 불법행위에 동조함.

독일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지 않고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의 파견을 받더라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경비대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법률 제 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2(국회경비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 경비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경비대를 둔다.
 - ② 국회경비대의 대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總警)으로 보한다.
 - ③ 국회경비대장은 국회의 경비와 관련된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9조의2(국회경비대) ① 서울특
	별시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
	경비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국회경비대를 둔다.
	② 국회경비대의 대장은 경무
	관 또는 총경(總警)으로 보한
	<u>다.</u>
	③ 국회경비대장은 국회의 경
	비와 관련된 사무에 있어서는
	<u>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u>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